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 본격화

- 안정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공급 위해 과기정통부-기후부
업무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민관이 협력하여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과기정통부-기후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체결되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와 김성환 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국가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있을 경우 양 부처가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보를 한층 가속화하여 인공지능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문안. 끝.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기철 (044-202-6590)
		담당자	사무관	용인호 (044-202-6593)
	주무관		박순홍 (044-202-6594)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조영길 (044-203-388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 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양 부처”)는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하여 안정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국가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부처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2.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국가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단,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재논의
3. 대규모(GW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전력공급 방안 마련

제3조(추진방식) 양 부처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 부처간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정보교환) 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정보 제공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 된다.

제6조(효력발생 및 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의 서면 종료 통보가 없는 한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지) 본 협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표시를 하여 본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1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 성 환
